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01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0.
3. 회부연월일 : 2025. 10.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음.

이로 인해 국내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

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정보, 매출액 정보, 과세표준, 계산서 또는 영수증 관련 정보 등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하고,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 관련 정보 등의 제공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5조의2(정보 제공 요청)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한다)로서 다
음의 정보

- 1) 매출원가
-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및 그 세부내역
- 3) 영업손익
- 4) 당기순손익

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다음의
정보 세부내역

- 1) 매출원가
-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및 그 세부내역
- 3) 영업손익
- 4)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5) 법인세비용
- 6) 당기순손익

사.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관할 세무
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같은
법 제1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아. 다음에 따라 전송·제출받은 정보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
급액 및 같은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
급거래액
-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
드 결제금액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u>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 보수를 합산한 금액</u>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하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u> ④ <u>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u> ⑤ <u>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⑥ <u>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u>
--	--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소상공

1)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21192호, 2026. 6. 3. 시행)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인 지원 및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5장에서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및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²⁾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과세정보 등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³⁾

다만, 소상공인 해당 여부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이하 생략)

2)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21192호, 2026. 6. 3. 시행)

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21192호, 2026. 6. 3. 시행)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자산총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포괄적 근거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하여,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중·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라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정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디지털 기반 선제 대응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며,⁵⁾ 국세청과 협업하여 국세데이터 연계 및 다중·부업사업자 선별을 통해 정확한 순 자영업자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 대상 명확화 및 영세 자영업자 대상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⁶⁾

4) 김유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장,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2차) 자료집, 국회의원 오세희·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2025.6.30.

5) 구체적으로,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게는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고 함. 그리고 폐업 시 6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고용노동부와의 연계 지원을,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상권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함.

한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지난 2025년 1월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⁷⁾ 개정을 통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6)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2025.12.17.) 자료 및 보도자료(“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 2025.12.17.) 참조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04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다음에 따라 전송·제출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2.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가.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나. 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 위반 기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

(이하 생략)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 ② 상권정보시스템 및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③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⁸⁾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생략)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이하 생략)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포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경우 표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의 사업자 DB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정책 설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국세청은 ① 과세정보의 요청범위를 ‘소상공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는 등 요청 대상 정보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고, ② 중소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3. 플랫폼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촉진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법인·단체·민간기업체의 장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생략)

벤처기업부장관이 제공받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원칙⁹⁾에 어긋나므로 해당 조항(안 제35조의2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③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안 제35조의2제1항제1호아목2))은 국세청이 생산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법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465